

## ●문화재청공고 제2022-366호

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‘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04일

문화재청장

### 국가문화재등록예고(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)

1. 공 고 명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2. 예고내용

1) 대상문화재

문화재명칭(안)	수량	규격(cm)	제작 연대	소유자 (소재지)
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	1건 680점	○ 관측야장 12cm × 17cm ○ 월보원부 27cm × 36cm ○ 연보원부 20cm × 27cm ○ 누년원부 26cm × 37cm	1904~1951 1904~1953 1904~1961 1904~1963	국립기상박물관 (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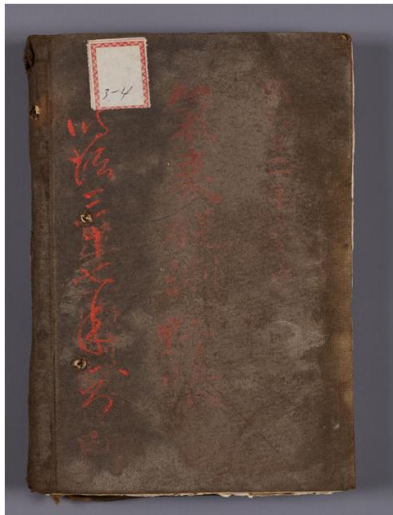
2) 등록 예고 사유

- 「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」은 1904년 3월 25일 제2 목포임시관측소\*가 전남 신안군 옥도리에 설치된 이후 1963년까지 관측한 기상정보를 기록한 자료 4종\*\*이다. 관측야장은 기온, 강수, 바람, 기압 등 기후요소들에 대한 주기적 관측치(5~6회/일), 기상현상 발생 특성, 관측기기의 오차보정 등 현대 기상관측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었다. 또한, 월보·연보·누년원부는 누적된 일일 관측기록을 활용하여 월, 연단위로 월 평균값을 산출·기록하는 등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연속성이 우수하다.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가치가 높고, 근대 기상관측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다.

\* (장소) 1904년 신안군 옥도리→1906년 목포 대의동→1997년 목포 연산동

(명칭) 1904년 제2 목포임시관측소→1908년 목포측후소→1992년 목포기상대

\*\* (4종) 관측야장, 월보원부, 연보원부, 누년원부



관측야장 표지

1904년 3월 25일 관측 기록

3. 등록 예고일 : 2022. 11. 4.

4. 등록예고 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자율서식)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 사항

-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「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/ 새소식 / 문화재지정예고」에 등재

다. 연락처

- 전 화 : (042)481-4891, 4892, 4889
- 팩 스 : (042)481-489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